

정관 변경내용 신 · 구조문대비표

2021. 03. 30.

노티스 정관 변경내용 신 · 구조문대비표		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2조 (목적) 1.~28. (락)</p>	<p>제2조 (목적) 1.~28. (좌 동)</p> <p>29. 액셀러레이터 활동(창업자 선발, 보육, 투자 등) 30.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31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</p>	<p>-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</p>
<p>제10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 ①~⑦ (생 략) ⑧ <u>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⑨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 ①~⑦(좌 동) ⑧(삭 제) ⑨(좌 동)</p> <p>⑩ <u>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, 주식배당,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</u></p>	<p>-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</p> <p>-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신설</p>
<p>제10조의4(신주의 배당기산일)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</p>	<p>제10조의4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</p>	<p>-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12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(생략)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</p>	<p>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제12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(과동)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2조의1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②이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.</p> <p>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</p>	<p>동등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</p> <p>-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상을 반영</p> <p>-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-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-전자주주명부의 작성근거 신설</p> <p>-문구를 명확히 함 -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단서 신설)</p> <p>제15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~③(과동)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5조의 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~④(생략)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32조(이사의 보선) ①(생략) ②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제15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~③(과동) ④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p> <p>제15조의 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~④(과동) ⑤(삭제)</p> <p>제32조(이사의 보선) ①(과동) ②(삭제)</p>	<p>는 근거를 신설</p> <p>-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</p> <p>-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</p> <p>-제29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41조의1(감사의 수와 선임) ①~②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1조의1(감사의 수와 선임) ①~②(좌동)</p> <p>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- 상법 제 409조 제3항 반영</p> <p>-개정 상법 제 542조의12 제 7항 반영</p>
<p>제45조(이익배당) ①~②(생략)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45조(이익배당) ①~②(생략) ③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-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45조의2(분기배당) ①~③(생략)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45조의2(분기배당) ①~③(생략) ④(삭제)</p> <p>칙 이 정관은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(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)부터 시행한다.</p>	<p>-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의4를 조정에 따라 중간배당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</p>